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 연장 〉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9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0일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Ⅲ. 검토의견

1.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 신고 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하던 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 신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 ----- ----- -----30일-----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¹⁾,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도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하며,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고용하게 하는 사업(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²⁾은 제외)을 의미함.

2024년 10월 31일 기준 직업소개사업체는 18,043개, 직업정보제공사업체는 1,419개소, 근로자공급사업체는 44개소로 나타남.

[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소계	국내무료	국내유료	국외무료	국외유료		
사업체수	18,043	1,732	16,083	27	201	1,419	44

※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하던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 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과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됨.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³⁾

그런데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2020~2024년 동안 매년 직업소개사업 폐업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현행 폐업신고 기간이 짧아 신고가 누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2020~2023년 「직업안정법」 제3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직업소개사업 폐업 미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미신고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미신고
2020	1	1	-	-
2021	6	6	-	-
2022	5	5	-	-
2023	3	3	-	-

※ 1)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미신고는 모두 「직업안정법」 제35조 위반에 따른 것임

2)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 신고 기한을 현행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폐업 신고 미준수에

3)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